

강원특별자치도

경고·시정

제 목 공가 등 휴가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소방서 ○○○○○○(前 ○○○○○○○○ ○○○○○○) 소방○(前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에서는 2020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병가·공가 등의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가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건강검진 등¹⁾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²⁾을

-
- 1)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

공가로 승인해야 하고,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다. 공가', '(2) 공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다)'에 따르면,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전보 시 이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강원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제11조³⁾에 따르면, 전일근무 또는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소방청에서는 2020. 4.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 2021. 8. 18.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경조사 특별휴가 적용 기준을 시달⁴⁾하면서, 시·도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2) 2022. 1.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개정 당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접종 공가 사유를 신설하면서 공가사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가 부여 기간을 구체화 함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체
- 3) 「구.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 제12조(2021.1.20.) * 「강원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2023. 1. 20.개정)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2021. 7. 15. 이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2. 2. 18.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적용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휴가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특별휴가의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고 기준을 재시달⁵⁾하였고, 기존 복무처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 등을 고려하여 소급 적용을 자제하도록 시달하였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건강검진 등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신청하였어야 했고, 결재권자는 공가 신청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하였어야 했으며,

2022. 2. 18. 이후 경조사 특별휴가를 사용 시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확인하여 특별휴가를 신청하여야 했고, 결재권자는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규정된 일수만큼 승인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공가 신청 및 승인의 부적정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인사발령, 자격시험 등 공가사유가 아님에도 총 6명이 공가를 신청하였고, 결재권자는 공가사유가 아님에도 승인하였다.

그리고 소방○ ○○○는 ○○○○○○○○○(○○○○○○)에서 예산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 5. 25. 특수건강검진 사유로 공가를 승인받은 후 몸살기운 등으로 자가 휴식을 취하면서 특수건강검진은 받지 않은 채 2021. 6. 3. 코로나 대

4) 소방청 소방정책과-6848(2021.8.18.)호 「법제처 법령해석 경조사 휴가 적용 기준 알림」

5)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130(2022.2.18.)호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적용 기준 알림」

응추진 특별휴가를 활용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건강검진 공가를 신청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 및 승인의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차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 3]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비교표

구분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대상	일수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자녀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그런데 ○○○○○○○○○(○○○○○·○○○○○·○○○○○)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강원도 조례 경조사 규정에는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 휴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총 2명이 특별휴가를 신청하였고, 결재권자는 경조사 특별휴가 사유가 아님에도 승인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는 2019. 1. 7.부터 2021. 7. 4.까지 ○○○○○○○○○ ○○○○ ○에 근무하면서, 2021. 5. 25. 특수건강검진 사유로 공가를 승인받은 후 몸살기 운 등으로 수검 받지 않았음에도 공가를 연가로 변경하지 않는 등 건강검진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장은

- ① [시정] 공가·특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복무관리가 잘못되어 초과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221,840원 및 연가보상비 513,280원을 회수하여 도금고로 세입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당한 휴가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속직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은

-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의·시정

제 목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 ○○○○○) 소방○(前 소방) ○○○
② ○○○○○○○○○○ ○○○○○(前 ○○○○○)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특근매식비를 집행하였다.

[표 1] 특근매식비 집행 현황

연도	사업명	통계목	내용	금액(원)	대상인원
2020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초과근무자 매식비	952,000	119명
2021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초과근무자 매식비	2,345,900	301명
2022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초과근무자 매식비	1,094,000	138명
2023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초과근무자 매식비	445,000	56명
2024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초과근무자 매식비	-	0명

※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편성목·통계목으로 분류하고, 「같은 규정」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에 따라 세부분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매식비는 200 물건비 - 201 일반운영비 - 01. 사무관리비 중 5. 급량비에 포함되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 접속기록, 문서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훈령」 [별표 4] 3.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특근매식비의 경우는 신용카드의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이용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업체에 계좌이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경우 급식 제공 대상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초과근무실적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했고,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 받은 근무자 외 국내출장자가 출장종료 후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의 식비와 매식비가 중복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였어야 했으며, 초과근무자 등에 대한 매식비는 정기적으로 1개월 이하의 기간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업체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계좌이체를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소속 직원 7명에게 관외출장에 따른 식비 20,000원⁶⁾이 포함된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총 57건의 특근 매식비를 중복 지급하였는데, 이 중 소방☆ ☆☆☆은 2020. 4. 27.부터 2022. 1. 9.까지 ○○○○○에서 소방청사 신·증축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식비 25건 197,300원을 중복하여 지급받았고,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2. 7. 10.까지 ○○○○○에서 소방행정 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식비 10건 77,800원을 중복하여 지급받았다.

나. 특근매식비 운영 소홀

○○○○○○○○○○(○○○○○○)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소속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의 지급을 월별로 정산하지 않고 2023년 9월에는 6월·7월·8월분을 정산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

6)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전 지출 건(2023.3.2.개정 후 식비 25,000원)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0. 4. 27.부터 2022. 1. 9.까지 ○○○○○에서 소방청사 신·증축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19개월) 중 관외출장으로 식비를 포함한 여비를 지급 받았음에도 당일 초과근무를 하면서 특근매식비 25건 197,3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받았다.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2. 7. 10.까지 ○○○○○에서 소방행정 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11개월) 중 관외출장으로 식비를 포함한 여비를 지급 받았음에도 당일 초과근무를 하면서 특근매식비 10건 77,8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시정]** 관외출장여비와 중복 지급한 매식비 448,900원을 회수하여 도금고로 세입 조치하시고, 아울러 특근매식비의 월별 정산 및 지출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③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